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5년 하반기 공공재정 보조금분야 특정감사 —

2025. 12.

1. 처분요구일람표

1. 보조사업 인건비 지급 부적정 (시정) 3

2. 지방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시정) 6

3. 보조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소홀 (통보) 9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인건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경상북도 ☆☆☆☆☆을 위해 §§§§§§§§§§§§에 아래[표1]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표1] § § § § § § § § § § § § § § § § 지원사업 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 한 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중복 수급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같은 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실제 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 청구로 환수 처리 등을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과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건, ※※※천원의 인건비를 동일인에게 동일 날짜에 중복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환수 등의 조치없이 정산 확정 한 사실이 있다.

[표2] 보조사업자가 동일인에게 동일 날짜에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2024) “생략”

그 결과, 보조금이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의 관리·감독 및 정산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지출된 보조금 ****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 및 ‘△△△△△△△△△△’에 대한
법정운영경비를 아래 [표1]과 같이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표1]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①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③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¹⁾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단체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하여,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된 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운영하여

1) 각항의 사유에 2개월 이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공시 등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관리를 위하여 보템e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중복수급 검토,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부정수급자 관리, 부정징후모니터링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출 요령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통장내역, 지출결의서등 사용내역이 일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정산시 주요 지출항목별 체크리스트 주요 점검사항에 국내여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기준단가, 지자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참고하여 교통, 숙박 등에 대한 집행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해당사업의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면 집행 내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국내여비의 경우 교통비 등 출장증빙이 없을 경우 등과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용무로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정산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국내여비를 지출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교통비 미증빙 및 일비, 식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하거나, 사적용무로 출장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건 *****원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처리 승인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정산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표2] 2024년 보조금 국내여비 부적정 집행현황 및 보조금 반납액 산출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의 관리·감독 및 정산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원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통 보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 @ @ @ @ @ @ 과
내 용

@ @ @ @ @ @ @ 과에서는 경상북도 <<<<<<<<<<<을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도비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생략”

「지방보조금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0조에 의하면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²⁾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는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 @ @ @ @ 과에서는 보조금 정산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일반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 후 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집행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의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만큼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만약,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받지 않는다면, 보조사업자가 교부된 보조금의 일부를 환급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조사업자의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증가시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등의 부당한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

2)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원의 발생여부 등 신고내역³⁾을 확인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절차 없이 지방보조금을 정산 완료 하였다.

[표] 디지털문제해결지원사업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된 부가가치세 내역 “생략”

3) 신고대상자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금액, 환급금 등을 확인 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